

	<h2 style="margin: 0;">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칙</h2>		규정번호	3-4-30
			제정일자	2017. 11. 10
	개정일자	2019.03.01	개정번호	ver. 1
	총페이지	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고 한다) 학칙 제30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의 교육과정이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및 수요자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교육과정이란 특정 학과 또는 전공의 학생들에게 전공 및 교양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체계로서, 교과목, 이수구분, 이수단위, 시수, 이수시기 등으로 구성된다.

② 교과란 일정한 특성을 갖는 교과목들을 묶는 분류이다.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전공교과와 교양교과로 구성되며 특정한 필요가 있을 경우 새로운 교과를 정의하여 교과목을 분류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의 편성이란 교육과정을 개발, 개편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교육과정의 개발이란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⑤ 교육과정의 개편이란 교육과정에서 일부 교과목을 폐지하거나 새롭게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단위, 시수, 이수시기 등의 변경도 개편에 속한다.

⑥ 교육과정의 변경이란 환경 또는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이미 개발 또는 개편이 완료·확정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① 교육과정 편성 기준 및 교육과정편성표를 심의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은 교학처에서 주관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한다.

②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교학처장, 교무부처장, 산학협력처장, 기획처장, 종합정보지원실장, NCS교육운영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일반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 원칙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양 및 사이버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학과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 ① 학과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별로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를 두고 운영은 학과에서 주관하며 위원장은 학과장이 한다.

② 학과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는 학과 일반교수 및 산업체인사로 구성하되, 반드시 산업체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학과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교과목 개편(신설, 폐지, 명칭변경, 학기 및 학년 변동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교양교육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양교육과 관련한 제반 계획을 수립하고 교양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은 교양과에서 주관하며 위원장은 교양과장이 한다.

② 교양교육운영위원회는 교양과 일반교수 전원과 교무부처장, NCS교육운영지원센터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으로 구성한다.

③ 교양교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양교과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양 교과목 개편(신설, 폐지, 명칭변경, 학점 및 시수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① 학과장(교양교과의 경우는 교양과장, 이하 같음)은 매년 대내외 환경 및 수요 분석, 기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차년도 교육과정(안)을 작성하고 학과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교양교과의 경우는 교양교육운영위원회, 이하 같음)에 심의를 요청한다. 이때 교육과정(안)은 제7조의 교육과정 편성원칙을 만족해야 한다.

② 학과장은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육과정(안)을 11월 말까지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특정한 목적이 나 개발방법에 의한 교육과정의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서류의 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대내외 환경분석, 수요분석
2. 교육과정 평가 결과
3. 교육과정 개선사항(분석 및 평가 결과에 의해야 함)
4. 교육과정편성표
5. 교육과정변경내용(교과목 신설, 교과목 폐지, 교과목 명칭변경, 학점 및 시수변경 등)
6. 교과목별 책임교수 명단
7. 국문 및 영문 교수요목
8.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 회의록(교양교과는 교양교육운영위원회 회의록)

- ② 교학처장은 학과(또는 교양과)에서 제출한 교육과정을 검토한 후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③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해당 교육과정을 심의한다.
- ④ 제3항의 심의를 통과한 교육과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단, 교육과정이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는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 편성원칙)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로 구분하여 편성되며, 세부 영역은 각 호와 같다.

1. 교양교과 : 교양 필수, 교양 선택
 2. 전공교과 : 전공 필수, 전공 선택
- ② 교육과정은 본 대학의 교육목표와 학과의 인재양성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산업체 및 학생으로부터 기 편성된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이 조사·분석, 반영되어야 한다.
- ③ 전공교과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도록 편성한다.
1. 학기별 학점 및 시간을 적정 배분하여 과도 또는 과소한 수강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존 개설 교과목의 학기 변경은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변경 시는 과거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복학생의 애로 사항을 최소화 한다.
 3. 전공과목은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필수과목은 총 개설학점의 30% 이내(2년제 5과목 이내, 3년제 8과목 이내)의 비율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전공과목의 시수는 이론과목일 경우 학점과 동일하게 하며, 실습과목의 경우는 학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함을 권장한다.
 5. 학과별 전공교과 실습 시수 비율은 아래와 같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업체협약교육과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계열	실습시수 비율
공학 및 예·체능 계열	35% 이상
인문·사회계열	20% 이상

6. 학과별 전공교과의 학점, 시수, 교과목 수는 다음과 같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점, 시수, 교과목 수는 학과 교육과정표의 전공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03.01.>

과정	수업연한	편성원칙		
		학점	시수	교과목수
전문학사	2년제	82학점 이내	88시간 이내	33과목 이내
	3년제	114학점 이내	130시간 이내	46과목 이내
학사학위	1년제	24-30학점 내외	35시간 이내	10과목 이내
심화과정	2년제	66-72학점 내외	80시간 이내	24과목 이내

7. 가상강좌는 가상강좌운영규칙에 따라 편성한다.
 8.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운영규칙에 따라 편성한다.
- ④ 교양교과는 교양교육운영규칙에 따라 편성한다.
- ⑤ 신설 교과목은 기존의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교학처와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⑥ NCS기반교육과정, 사회맞춤형교육과정, 외부기관과 협약에 의한 교육과정, 산학협력

교육과정 등의 개발, 운영 및 평가에 따른 교육품질관리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과정 변경)** ① 교육과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기 개시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학과장(교양교과외의 경우는 교양과장)은 학기 개시 30일 전까지 변경의 사유가 포함된 교육과정 변경(안)을 작성하고 제7조를 준수하여 교학처장에게 교육과정의 변경을 신청한다.
- ③ 교학처장은 학과(또는 교양과)에서 제출한 교육과정의 변경사항을 검토한 후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④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해당 교육과정의 변경을 심의한다.
- ⑤ 제4항의 심의를 통과한 교육과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이 확정된다.

- 제9조(교육과정 폐지)** ① 학과장은 산업환경 및 요구분석 결과 학과 인재양성 유형이나 교육목표가 변경되어 더 이상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기로 판단되면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② 학과장은 교육과정 폐지사유와 타당성에 대해 학과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폐지 사유서(교육과정 폐지에 따른 대응 방안 포함)
 2.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 회의록
- ③ 교학처장은 학과에서 제출한 교육과정 폐지 사유와 대응 방안을 검토한 후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④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교학처장이 심의 요청한 교육과정 폐지를 심의한다.
- ⑤ 제4항의 심의를 통과한 폐지 요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 제10조(교과목 책임교수)** ① 학과장은 효과적인 수업운영을 위하여 교과목별로 수업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교과목 책임교수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② 교과목 책임교수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교과목의 진행 및 평가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해당 교과목의 교수요목을 작성한다.
 3. 강의계획서 및 교재선택, 수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강좌 담당교수에게 방향을 제시한다.
 4. 해당 교과목의 강의 참여 교수들과 함께 해당 과목의 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11조(NCS 전담교수)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평가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과에 NCS 전담교수를 두어 운영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9.03.01.>

[별지 제1호 서식]

학과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위원회 회의록

학과명	
-----	--

회의일시	년 월 일 () [: ~ :]	회의장소				
참석위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재적위원 수			참석위원 수			

회의안건 및 내용	
기타	
의결내용	

작성일		작성자		(인)	학과장		(인)
-----	--	-----	--	-----	-----	--	-----